






대령/김화중/2022-09-18

	<b>순서</b>	
Ⅰ	개요	
Ⅱ	게임의 본질 이해	
Ⅲ	게임 선포 조건 및 절차	
Ⅳ	게임 시행 체계	
Ⅴ	게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	
Ⅵ	지구·지역게임사 임무수행 체계	




62- 1

대령 / 김희종 / 2022-09-18



## 합참 계엄과 연혁




**㉑ 육군본부 계엄과 ('50.7.9 ~ '89.12.31)**

- ① 민사군정감실 군정과 창설 ('50.7.9), 계엄과로 명칭 변경 ('71.1.1)
- ② 민사심리전부 계엄과 ('87.8.1) 조직 개편


**㉒ 합참 계엄과 ('90.10.1 ~ 현재)**

- ① 민사심리전실 계엄과 창설 ('90.10.1) \* 818계획에 의거 계엄업무 합참 전환
- ② 민사심리전참모부 계엄과 ('92.3.10)로 '부'명칭 변경
- ③ 전략기획본부 군사기획부 계엄과 ('09.4.1) 조직 개편
- ④ 군사지원본부 민군심리전부 계엄과 ('11.3.1) 조직 개편
- ⑤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 계엄과 ('13.1.1)로 '부'명칭 변경

62 - 4




## I. 개 요(2/2)




**1 전시 계엄 소개 교육 요망수준**

- ㉠ 헌법에 기초한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군을 이용한 국가기능회복을 위한 비상통치 행위 · 군사작전이 아님, 계엄사는 행정 및 사법기관 지휘감독
- ㉡ 군사작전 지원, 공공질서 회복이 목적
- ㉢ 계엄선포는 국방부 / 행안부장관이 건의, 대통령 승인
- ㉣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
- 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
  - 포고문 공고, 계엄임무수행군 운용, 징발 등
  - 주한미군 및 가족, 외교사절과 직원 및 가족은 계엄법 적용 제외
- ㉥ 계엄사령부와 지구·지역계엄사령부 구분, 통합방위작전과 연계하 시행

62 - 9



## 계엄실무편람 개정 내용 (예)



- ㉠ 제주 4·3 사건과 계엄
  - 계엄령 선포전 공비토벌사령부 설치, 계엄법 제정 이전 계엄령 선포 논란
- ㉡ 여수·순천 10·19 사건과 계엄
  - 배경 : 제14연대에 침투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1948년 10월 19일 22시에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여수군과 순천군을 점령했다.
  - 계엄령 선포전 반군토벌사령부 설치, 계엄법 제정 이전 계엄령 선포 논란
- ㉢ 5·16 군사정변과 계엄
  - 배경 : 급속히 악화되어가는 정치적,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군 내에서 개혁의 의지가 분출하여 5·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다.
- ㉣ 10월 유신과 계엄
  - 배경 : 사회질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였다.

※ 당시의 헌법정신과 국민의식에 부합되는 법 집행에 대하여 고민하고 행동해야 ~

62 - 10

## Ⅱ. 게임의 본질 이해(1/4)

**1 게임의 어원**

가) 명나라 장자열이 지은 정자통(政字通, 1670년 경)  
 ⇨ 敵將至設備曰戒嚴(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 함을 게임이라 한다.)

**2 우리나라 게임법 적용 / 변천내용**

가) 1913년 일본, 명치헌법 제76조 「조선에 관한 속령」으로 게임령을 조선에 적용  
 · 1882년 프랑스 합위법을 모방, 명치헌법에 게임법 제정

나) 해방 초기 美 군정 법령 제11호에 의거 게임령 효력 지속

다) 1949. 11월 게임법 제정(23개조)

라) 1981. 4월 지금의 형태로 전부 개정(14개조) · 이후 2차에 걸친 일부 개정

※ 외국의 국가긴급권 제도와 게임


62 - 11

## 게임법 개정(11회)


구 분	제·개정일	주 요 내 용
제 정	1949. 11. 24	게임 선포, 시행,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정(23개조)
전부개정	1981. 4. 17	시대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완(14개조)
타법개정	1987. 12. 4	군법회의법 개정(군법회의→ 군사법원)
타법개정	1997. 12. 13	정부조직법 개정(직할시→ 광역시)
일부개정	2006. 10. 4	국민 재산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포함
타법개정	2008. 2. 29	정부조직법 개정(내무부장관→ 행정안전부장관)
일부개정	2011. 6. 9	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'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어문 규범 준수
타법개정	2013. 3. 23	정부조직법 개정(행정안전부장관→ 안전행정부장관)
타법개정	2014. 11. 19	정부조직법 개정(안전행정부장관→ 행정자치부장관)
타법개정	2015. 1. 6	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
타법개정	2017. 3. 21	군인사법 개정(장관급→ 장성급)
타법개정	2017. 7. 26	정부조직법 개정(행정자치부장관→ 행정안전부장관)

· 1949년 제정, 1981년 전부개정, 이후 2차례의 일부개정과 8차례의 타법개정

62 - 12



## Ⅱ. 게임의 본질 이해(1/4)



**1 게임의 어원**


- 가) 명나라 장자열이 지은 정자통(政字通, 1670년 경)  
 ⇨ 敵將至設備曰戒嚴(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 함을 게임이라 한다.)

**2 우리나라 게임법 적용 / 변천내용**


- 가) 1913년 일본, 명치헌법 제76조 「조선에 관한 속령」으로 게임령을 조선에 적용  
 · 1882년 프랑스 합위법을 모방, 명치헌법에 게임법 제정
- 나) 해방 초기 美 군정 법령 제11호에 의거 게임령 효력 지속
- 다) 1949. 11월 게임법 제정(23개조)
- 라) 1981. 4월 지금의 형태로 전부 개정(14개조) · 이후 2차에 걸친 일부 개정

✓※ 외국의 국가긴급권 제도와 게임

62 - 13



## 타국 게임법 적용



**1 영·미법제(헌법에 미명시, 관습·관례적 성격 게임 적용)**

- 가) 영 국 : 의회선포, 행정부 위임시행
- 나) 미 국 : 연방헌법 / 주 헌법 규정외 사태발생시 대통령 / 주지사 선포  
 ※ 행정 및 사법권한 변동 없음

**2 대륙법제(헌법 명시, 일부 권한 제한)**

- 가) 프랑스 : 의회 선포, 기본권 제한
- 나) 독 일 : 내각 선포, 기본권 제한, 1945년 폐지 (국가긴급권 제도)
- 다) 일 본 : 천황 선포, 기본권 제한, 1945년 폐지 (국가긴급권 제도)
- 라) 대만 / 필리핀 : 의회 / 대통령 선포, 기본권 제한

62 - 14

**Ⅱ. 계엄의 본질 이해(2/4)**

**1 계엄의 정의**

**헌법 제 77조**

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하나

**상 황**

-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

**목 적**

- 군사상의 필요,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

➔

**계엄 선포**  
(대통령)

62 - 15

**국 가 긴 급 권**

**계엄은**

**대통령이 국가 위기 시에**

**행정 및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**

**軍을 사용하는 비상통치행위 임.**

※ **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**

**敵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작전이 아님.**

62 - 16

**Ⅱ. 계엄의 본질 이해(2/4)**

**1 계엄의 정의**

**헌법 제 77조**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하나

**상 황** ·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

**목 적** · 군사상의 필요,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

➔

**계엄 선포**  
(대통령)

62 - 17

**헌 법 77 조**

㉠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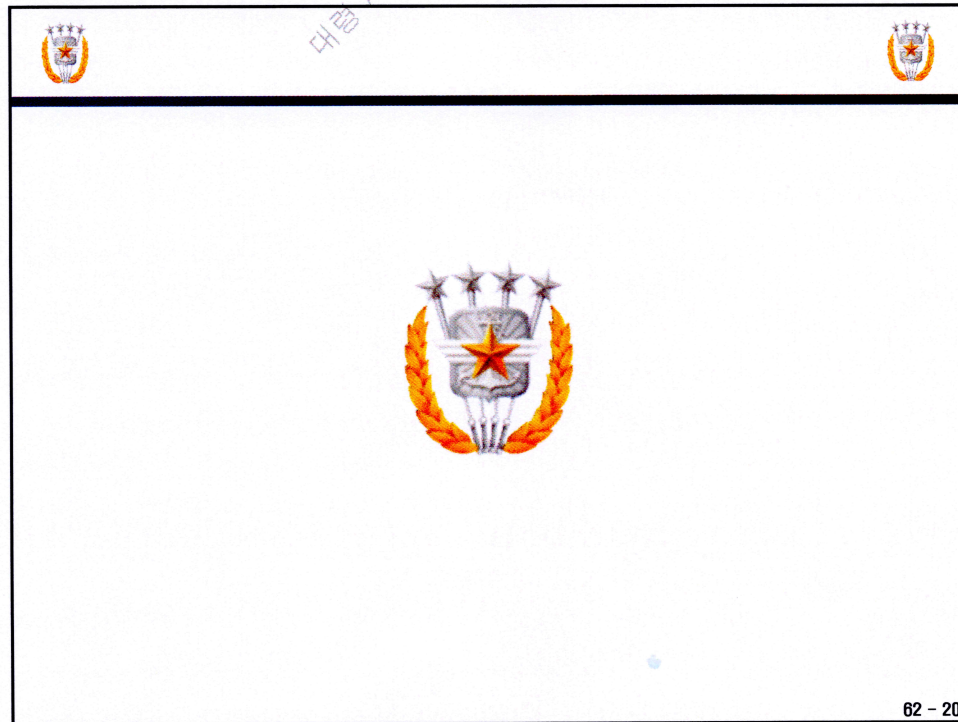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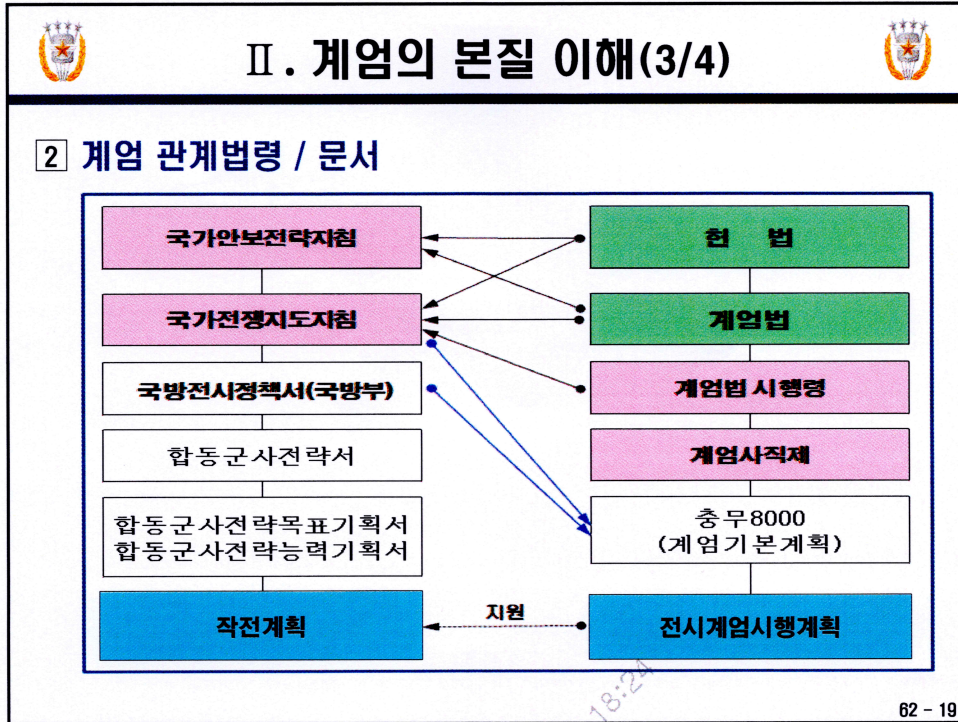
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.

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
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62 - 18



<b>Ⅱ. 계엄의 본질 이해(4/4)</b>		
<b>3 계엄의 종류</b>		
구 분	비 상 계 엄	경 비 계 엄
시 기	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	
선 포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</li> </ul>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</li> </ul>
관 장 업 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사무</li> </ul>
특 별 조치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의 기본권 / 재산권 제한 가능 (체포, 구금, 압수, 수색, 거주·이전, 언론·출판 집회·결사 또는 단체행동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없 음</li> </ul>
재판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란·외환에 관한 죄 등 13개 범죄</li> <li>• 지휘·감독권 / 특별조치권 위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없 음</li> </ul>
선포권자	대 통 령	



### Ⅲ. 계엄 선포 조건 및 절차(1/2)

---

**1 계엄선포 조건(법적 근거)**

**헌법  
제 77조**

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① **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**  
 ② **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**

**계엄법  
제 2조**

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 
 ③ **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.**

62 - 23

### 법적 의미 해석

---


㉠ **군사상의 필요에 응한다는 의미는 총동원, RSO, 징발 등 군사작전의 필요에 요구되는 총력전태세를 완비한다는 의미**

㉡ **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전시 사회질서가 마비되어 경찰력과 행정력으로는 통제불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력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**


㉢ **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함은 물리적인 장애 또는 고도의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행정 및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발휘, 즉 법적규제가 어려운상태를 의미**

※ **전시 계엄선포는 국가비상사태시 행정 및 사법기능의 회복,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닌 사후조치**


62 - 24




### Ⅲ. 계엄 선포 조건 및 절차(1/2)



**1 계엄선포 조건(법적 근거)**




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②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




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③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.

62 - 25



### 법적 의미 해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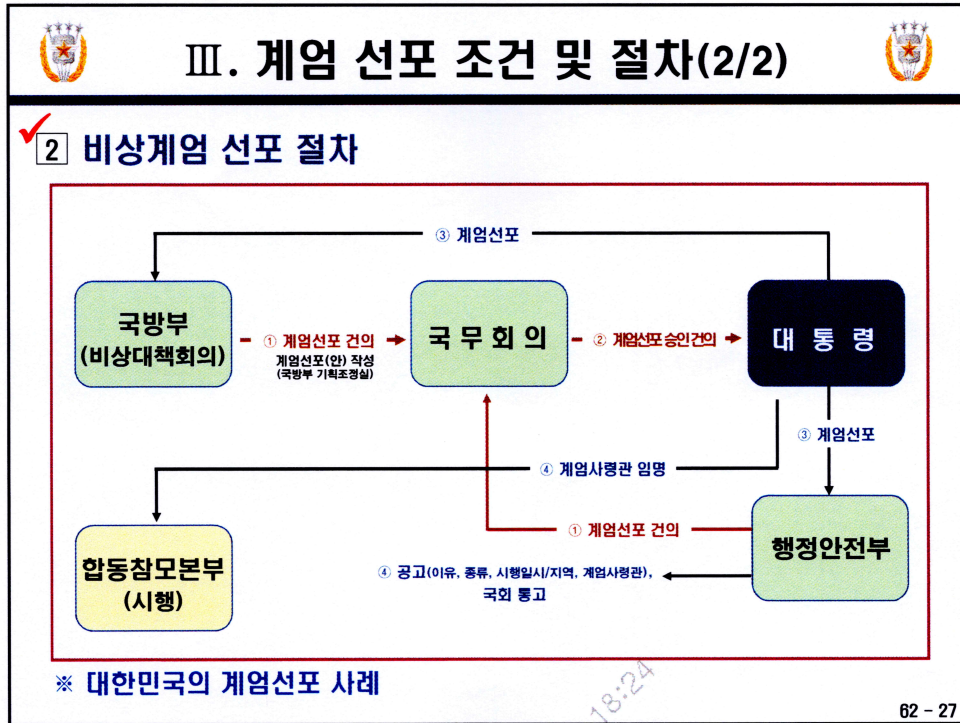
㉑ 군사상의 필요에 응한다는 의미는 총동원, RSOI, 징발 등 군사작전의 필요에 요구되는 총력전태세를 완비한다는 의미

㉒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전시 사회질서가 마비되어 경찰력과 행정력으로는 통제불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력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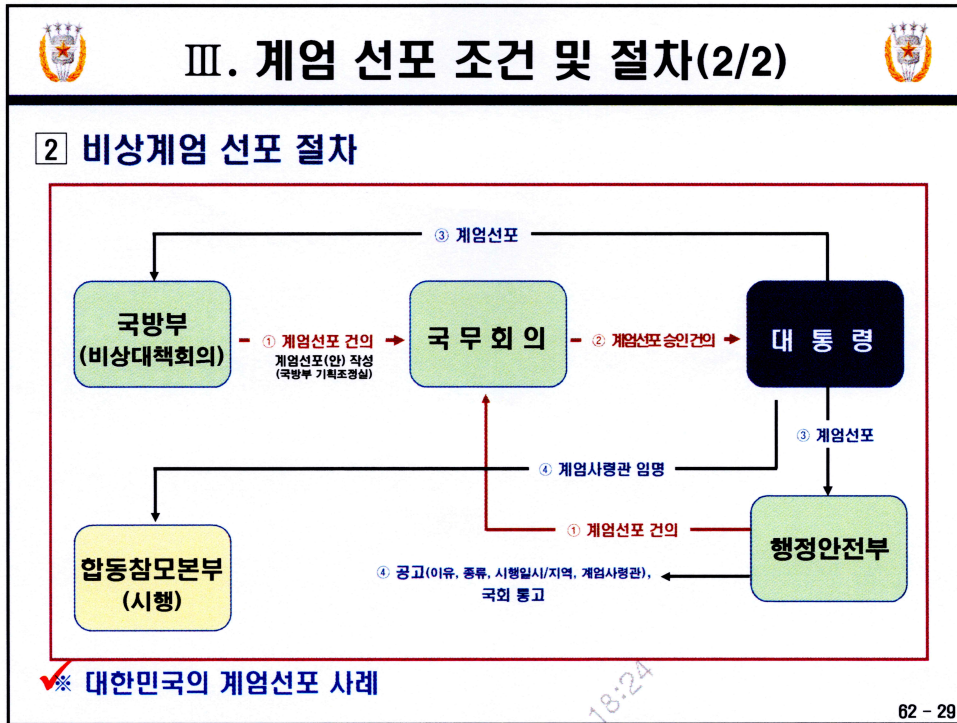
㉓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함은 물리적인 장애 또는 고도의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행정 및 사법부의 정상적인 기능발휘, 즉 법적규제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

※ 전시 계엄선포는 국가비상사태시 행정 및 사법기능의 회복,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닌 사후조치

62 - 26



- ### 선포 절차 이해
- ㉠ 선포건의를 게임법 2조에 의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
    - 국방부 직제 7조 : 기획조정실에서 게임관련 정무 판단
  - ㉡ 게임을 선포 / 변경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결정
  - ㉢ 게임선포는 헌법 77조 의거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,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
  - ㉣ 대통령이 선포시에는 『이유, 종류, 시행일시, 시행지역, 게임사령관』을 반드시 공고해야 하며,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
    - 국회 통고 : 입헌주의적 법치국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
- ※ 전시 게임선포는 국방부 및 합참 직제에 따라 국방부에서 판단, 건의하고 합참은 게임시행에 중점을 두고 임무수행
- 62 - 28



### 정부수립 후 계엄선포

구 분	기 간	계엄 종류	지 역
여수·순천 10·19사건	1948. 10. 25 ~ 1949. 2. 5	합위지경(비상계엄)	여수군·순천군
제주 4·3 사건	1948. 11. 17 ~ 1948. 12. 31	합위지경	제주
6·25 전쟁	1950. 7. 8 ~ 1952. 7. 28	비상 ↔ 경비	전국(전국 ↔ 지역)
공비소탕	1953. 12. 1 ~ 1954. 4. 10	비상	경상도 및 전라도 24개 군
4·19혁명	1960. 4. 19 ~ 1960. 7. 16	경비 → 비상	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마산
5·16 군사정변	1961. 5. 16 ~ 1962. 12. 5	비상 → 경비	전국
6·3 사태	1964. 6. 3 ~ 1964. 7. 29	비상	서울
10월 유신	1972. 10. 17 ~ 1972. 12. 13	비상	전국
부마민주항쟁	1979. 10. 18 ~ 1979. 10. 26	비상	부산
10·26 사태 및 12·12 사태	1979. 10. 27 ~ 1981. 1. 24	비상	전국(제주도 제외) · 1980. 5. 17 제주도 포함

※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 계엄 선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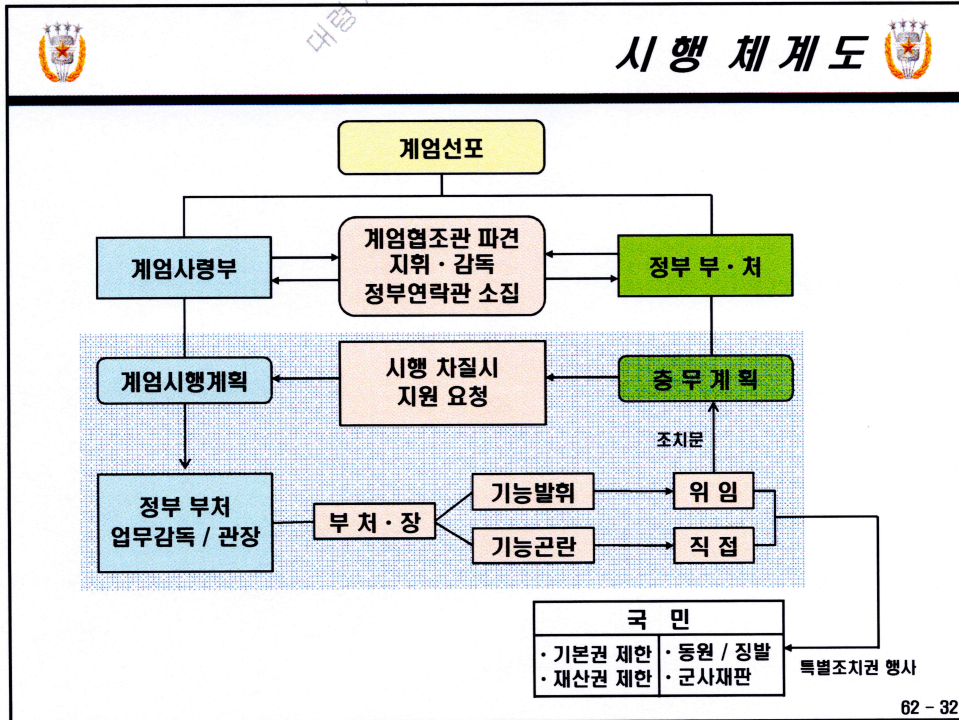
62 - 30

## IV. 게임 시행 체계(1/4)

**1] 게임시행 지침(게임법 근거, 비상게임 기준)**

- ㉠ 게임선포와 동시 게임사령관은 게임사령부를 설치,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 / 지역게임사령부 설치 가능
- ㉡ 게임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게임업무 시행
- ✓㉢ **게임선포와 동시 게임사령관은 게임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, 게임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게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**
- ㉣ 게임시행간 주요범죄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실시
- ㉤ 게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·구금·압수 등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법률에 따라 동원 및 징발 가능

62 - 31



### IV. 게임 시행 체계(1/4)

**1] 게임시행 지침(게임법 근거, 비상게임 기준)**

- ㉠ 게임선포와 동시 게임사령관은 게임사령부를 설치,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 / 지역게임사령부 설치 가능
- ㉡ 게임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게임업무 시행
- ㉢ 게임선포와 동시 게임사령관은 게임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, 게임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게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✓㉣ 게임시행간 주요범죄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실시
- ㉤ 게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·구금·압수 등 특별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법률에 따라 동원 및 징발 가능

62 - 33


### 게임군사법원 관할 범죄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내란의 죄</li> <li>㉡ 외환의 죄</li> <li>㉢ 국교에 관한 죄</li> <li>㉣ 공안을 해치는 죄</li> <li>㉤ 폭발물에 관한 죄</li> <li>㉥ 공무방해에 관한 죄</li> <li>㉦ 방화의 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㉧ 통화에 관한 죄</li> <li>㉨ 살인의 죄</li> <li>㉩ 강도의 죄</li> <li>㉪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</li> <li>㉫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</li> <li>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</li> </ul>
---	--


62 - 34








## IV. 게임 시행 체계(3/4)




**3] 특별조치권(법적근거)**



**헌법  
제 76, 77조**

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시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한 조치 및 명령을 발할 수 있다.

비상게임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 가능




**게임법  
제 9조**

게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·구금·압수·수색·거주·이전·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
게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수 있다.

게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.

62 - 41



## 법적 의미 / 시행



- ㉑ 특별조치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장제도·거주·이전·단체행동 등에 대해 제한 및 통제의 효력을 가짐
- ㉒ 특별조치 절차는 **게임사령관 포고문 작성** ⇒ **법무처 법률 검토** ⇒ **대통령 건의 / 승인** ⇒ **포고문 공고 후 시행**
- ㉓ 지구·지역게임사령관은 보조기관으로 특별조치(포고) 불가
  - 포고 접수 후 답화문, 공고문, 경고문을 통하여 해당지역 특별조치 시행
- ㉔ 포고령의 변경 및 해제는 반드시 포고문에 의해 이루어 짐
  - 공고, 훈령 형태로 효력 정지 불가(반드시 포고문에 의해 효력 정지)

※ 특별조치 시행 간에도 「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」 할 수 있도록 조치

62 - 42

## IV. 계엄 시행 체계(4/4)

**4 자유화지역 계엄시행**

- 가 계엄사의 임무 : 정부의 자유화계획 및 군사작전을 지원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통치권 회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
- 나 계엄 선포시 고려사항
  - ① 북한의 법적 지위 : 반국가 단체, 국가/교전 단체
  - ② 자유화지역 계엄 선포에 따른 법적 문제
    - 점령지역 병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 제47조 위반 소지
- 다 계엄 시행간 제한사항
  - ① 북한지역에서 법률 적용의 문제 (국제법, 국내법, 북한법 등)
  - ② 행정·사법 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재
  - ③ 연합군의 반격작전에 대한 북한주민의 부정적 인식
  - ④ 북한군 잔적(게릴라) 활동시 계엄소요 증대

※ **민군작전, 안정화작전, 계엄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시행되어야~**

62 - 43

## 계엄과 군정의 차이

구 분	계엄 (반국가 단체)	군정 (국가/교전 단체)
법적 지위	자유화 지역	점령 지역
법적 개념	국내법, 국제법	국제법
지역 성격	국내 / 국제 지역	국제 지역
시원성 (始原性)	본래 자국의 영토	본래 자국(동맹국)의 영토가 아님
주 체	계엄사령관	점령군 지휘관

· 북한지역 계엄 적용간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요소에 대한 이해 필요

62 - 44

## IV. 계엄 시행 체계(4/4)

**4 자유화지역 계엄시행**

- ㉠ 계엄사의 임무 : 정부의 자유화계획 및 군사작전을 지원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통치권 회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
- ㉡ 계엄 선포시 고려사항
  - ① 북한의 법적 지위 : 반국가 단체, 국가/교전 단체
  - ② 자유화지역 계엄 선포에 따른 법적 문제
    - \* 점령지역 병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 제47조 위반 소지
- ㉢ 계엄 시행간 제한사항
  - ① 북한지역에서 법률 적용의 문제 (국제법, 국내법, 북한법 등)
  - ② 행정·사법 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재
  - ③ 연합군의 반격작전에 대한 북한주민의 부정적 인식
  - ④ 북한군 잔적(게릴라) 활동시 계엄소요 증대

\* **민군작전, 안정화작전, 계엄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시행되어야~**

62 - 45

## 6·25 전쟁시 계엄 시행

- ㉠ 계엄 선포 : 1950. 7. 8      \*전쟁 초기 상황으로 15일 경과 후 선포
- ㉡ 계엄 해제 : 1952. 4. 21
- ㉢ 계엄 목적 : 전시 민심통제 및 경제질서 유지
- ㉣ 계엄사령관 : 육군 중 참모장 소장 정일권 (이후 3명 임무 수행)
- ㉤ 주요 상황별 계엄 시행      \*주요조치: 징발, 군사재판, 피난민 구호, 지방행정/치안

구분	'50. 7. 21	'50. 10월 ~ 11월	'50. 12. 7	'52. 4. 21
상 황	북한군 남하	남한 지역 회복, 연합군 북진	중공군 개입	지방선거
계엄 조치	비상계엄 선포 (남한 전 지역)	비상계엄 선포 (10.10, 북한 전 지역), 남한지역 계엄 해제 (11.10)	비상계엄 선포 (남한 전 지역)	비상계엄 해제

\* **UN 총회결의(50.10.7, 북한지역에서 남한의 통치권 행사 불가로 연합군에 의한 군정 실시**  
 - 군정 방침/정책 등 준비 미흡으로 일부 군인 및 사회단체에 의한 탈선 행위 (가옥 불법 점령, 귀중품 강탈, 식량/화폐 무단 유통, 주민 학살, 부녀자 폭행, 비인간적 행위 등) 자행

62 - 46

## V. 게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(1/3)

**1 임무 :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 수행여건 보장**

**2 기능**

- ㉠ 정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, 게임기능 수행 조정 및 통제
- ㉡ 게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, 게임사령부 보조기구 설치 및 운영

**3 편성 : 2실 8처, 게임보조기구로 구성**

```

graph TD
    A[게임사령관(의장)] --- B[게임부사령관(차장)]
    A --- C[참모장(군사지원본부장)]
    A --- D[비서실]
    A --- E[합동수사본부(안보지원사령관)]
    A --- F[게임군사법원(고등/보통)]
    A --- G[게임위원회]
    C --- H[기획조정실]
    H --- I[치안처]
    H --- J[법무처]
    H --- K[정보처]
    H --- L[작전처]
    I --- M[동원처]
    J --- N[구호처]
    K --- O[행정처]
    L --- P[보도처]
    
```

※ 게임사령관, 부사령관,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

62 - 47

## 게임 보조기구

게임위원회 (게임사령부 직제 제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게임업무에 관한 게임사령관의 자문기구</li> <li>· 게임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</li> <li>· 편 성 :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하여 20인 이내 구성</li> <li>· 필요시 사안별 위원 추가 위촉, 운용</li> </ul>
합동수사본부단 (게임사령부 직제 제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게임지역이 2개 이상의 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게임사령부에 합동 수사본부, 게임지역이 1개 도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게임사령부와 지구(지역)게임사령부에 합동수사단을 설치·운용</li> <li>· 게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와 정보·수사기관을 조정·통제</li> <li>· 구성 : 군 사법경찰관, 경찰공무원, 국가정보원 등</li> </ul>
게임군사법원 (게임법 제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비상게임지역 안에서 게임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재판하기 위해 군사법원 운용</li> <li>· 게임군사법원 지정 : 국방부</li> <li>· 게임사령부 및 지구·지역게임사령부 : 게임보통군사법원</li> </ul>

62 - 48

## V. 계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(1/3)

- 1 임무 :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 수행여건 보장
- 2 기능
  - 가 정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, 계엄기능 수행 조정 및 통제
  - 나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, 계엄사령부 보조기구 설치 및 운영
- 3 편성 : 2실 8처, 계엄보조기구로 구성

※ 계엄사령관, 부사령관,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

62 - 49

## 계엄 5대 기능

- 1 정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을 통한 공공질서 회복 추진

구분	주요 과업
치안	· 주민 및 차량이동 통제, 검문소 운영 · 불법집회 및 시위 진압, 주민성분분류 및 적대세력 색출
법무	· 계엄보통군사법원 운영, 범죄 처리 · 교정시설 관리, 출입국 통제
보도	· 기자단 통합관리 / 보도검열단 운영 · 북한 주민계도 / 홍보활동 강화
동원	· 군사지원작전을 위한 동원 · 징발 가용자산 파악, 징발 집행
구호	· 의료시설 및 인력 운용 · 군사작전지원 시설 / 기반시설 긴급복구 주민 구호활동

· 사이버 : 국가·민간 주요 정보통신망 확인 / 통제, 사이버공간 유언비어 통제 등

62 - 50

## V. 게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(1/3)

**1 임무 :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 수행여건 보장**

**2 기능**

- ㉠ 정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관장, 게임기능 수행 조정 및 통제
- ㉡ 게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, 게임사령부 보조기구 설치 및 운영

**3 편 성 : 2실 8처, 게임보조기구로 구성**

※ 게임사령관, 부사령관,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

62 - 51

## 기능처 · 실 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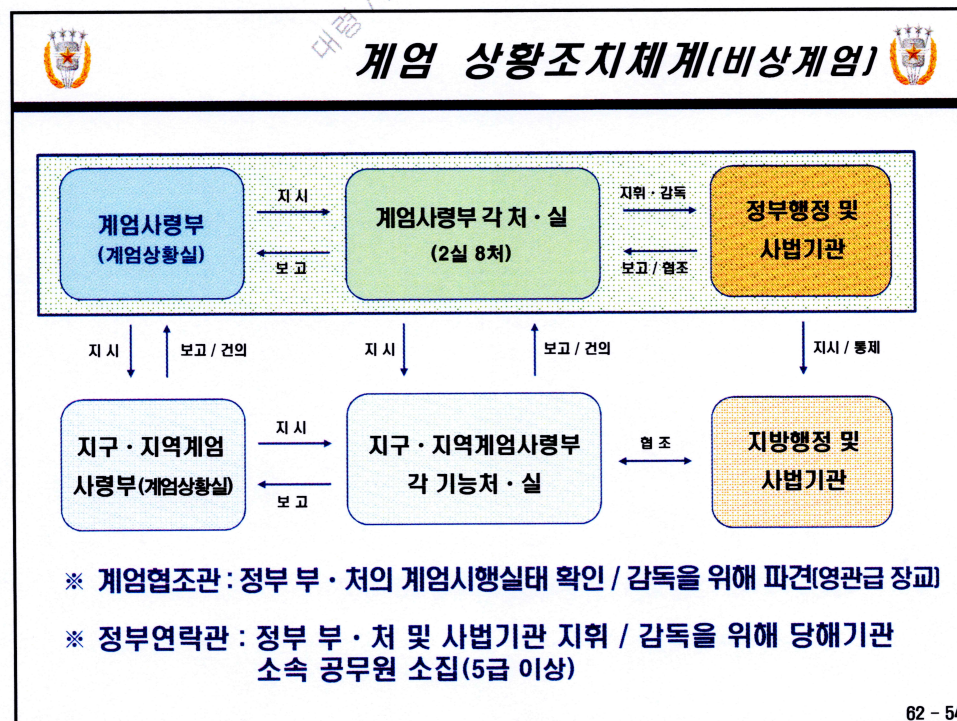
- ㉠ 기획조정실 : 게임업무 조정 및 통제, 게임상황실 운영, 사이버공간 보호
- ㉡ 비서실 : 게임사령관 보좌, 지시 / 강조사항 관리
- ㉢ 치안처 : 치안유지 활동 감독 · 통제(수사, 첩보수집, 주민 / 차량통제)
- ㉣ 법무처 : 게임군사법원 운영, 사법사무 감독, 검찰계획 시행
- ㉤ 정보처 : 군사상황 파악 및 유지, 군사보안업무 수행
- ㉥ 동원처 : 동원업무 차질시 정부 부 · 처 집행 통제, 징발 시행 감독
- ㉦ 작전처 : 게임임무수행군 운용, 군사작전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운영
- ㉧ 구호처 : 피해지역 구호, 긴급복구 등 지원 및 의료업무 계획 / 시행
- ㉨ 행정처 : 게임사령관 제반 행정, 근무지원업무 수행
- ㉩ 보도처 : 보도 및 보도검열 조정 · 통제, 게임조치문 공고

62 - 52

## V. 게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(2/3)

- ✓ 4 「게임상황실」을 중심으로 처·실, 지구 / 지역게임사, 정부 부·처와 연계하여 임무수행
  - 가 게임상황 접수 / 유지, 종합분석 ⇒ 게임사령관 보고
  - 나 처·실 및 예하 게임사령부, 정부 부·처와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
- 5 상황실은 상황·연락반과 기능별 연락장교, 정부연락관으로 구성
  - 가 게임상황관리(게임 VCP 이용), 처·실 및 예하 사령부 조치사항 확인 및 유지
  - 나 정부 부·처 조치사항 확인 및 주요현황 유지
  - 다 일일 / 수시 게임상황보고 및 공조회의 실시
    - \* 사안고려 게임사령관 및 기초실장 주관 회의 실시
- 6 각 처·실은 합참 기능실에 위치하여 조치, 게임상황실에 위치한 연락장교를 통해 시행결과 보고 / 현황 유지

62 - 53





### V. 계엄사령부 임무수행 체계(3/3)



#### 7] 군사작전 지원

##### 가) 군사작전 / 작전지속지원, NEO / RSO 수행 여건 보장

- ① 군사작전 / 지속지원, NEO / RSO 방해세력 진압, 봉쇄, 차단, 제거
- ② 주민 및 차량통제
- ③ 작전로 확보, 작전여건 보장

##### 나) 동원 및 징발을 통한 군사작전 지원

###### ① 동원 : 군사작전과 직결되는 동원업무 조정·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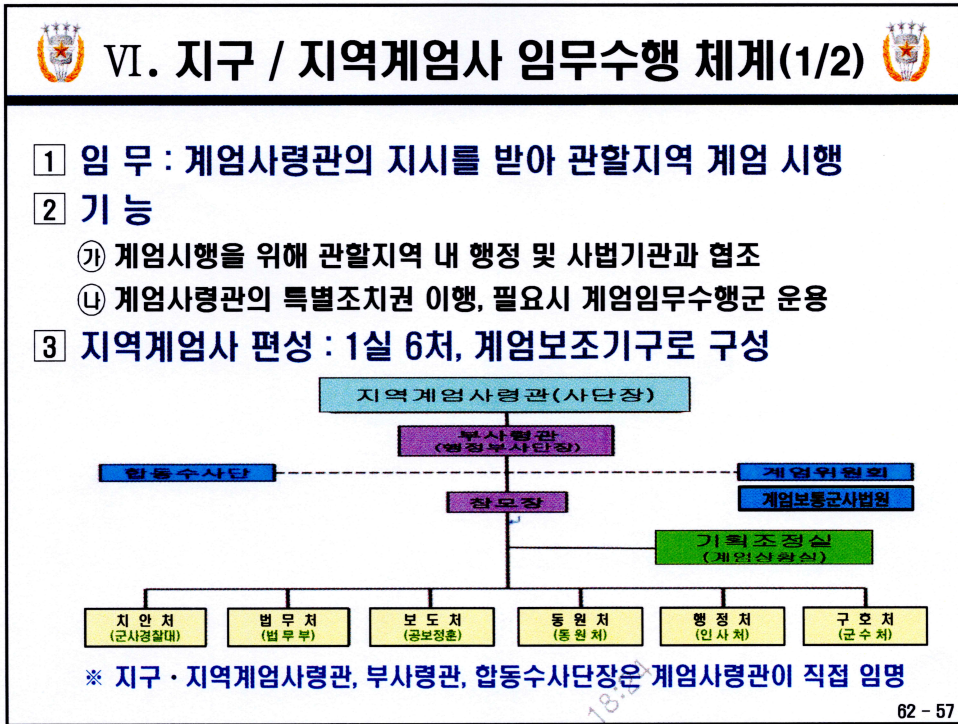
- 동원대상자 소집, 대량 병력손실 시 병력 증원, 생활필수품 확보(연료, 급수 등), 군 수요품 생산 통제 / 감독

###### ② 징발 : 정상동원 차질 / 작전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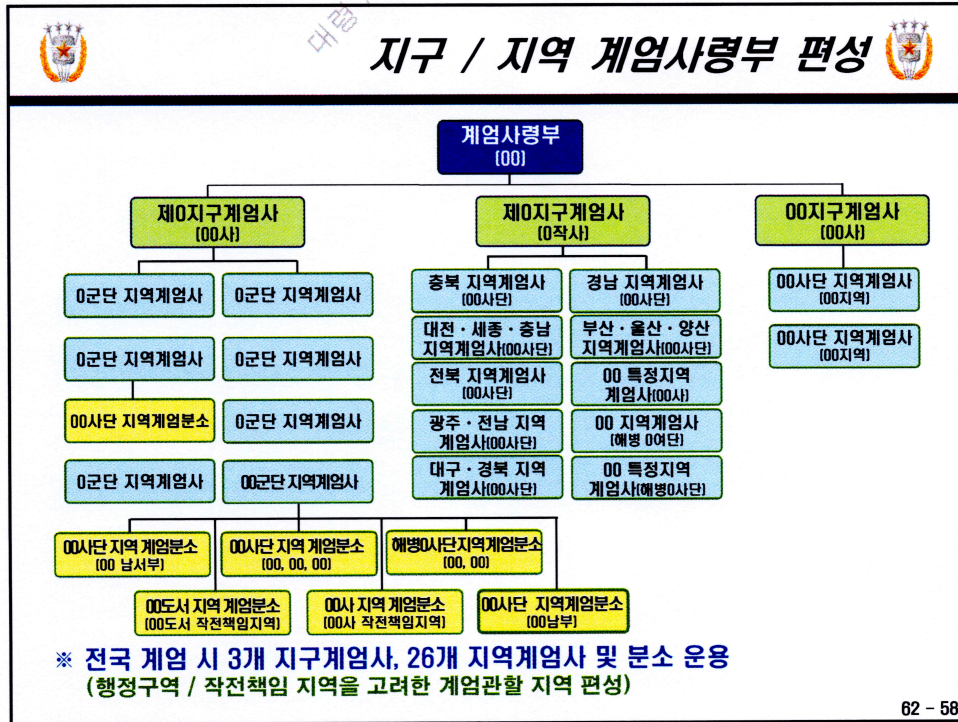
- 군 수요 긴급품목에 중점을 두고 작전지역에서 우선 실시(동산, 부동산, 권리 등)

대령/김화중 / 2022-09-18 18:24





62 - 5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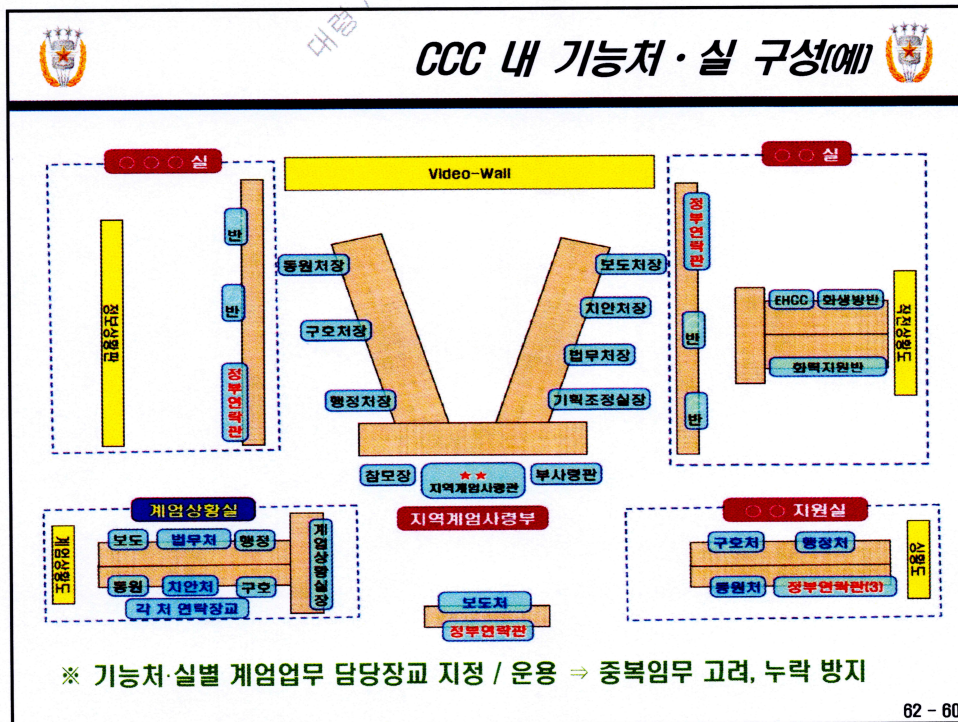


62 - 58



## VI. 지구 / 지역게임사 임무수행 체계(2/2)

- 4 CCC중심의 상황조치 체계 구축
  - ㉠ 게임상황실을 CCC내 위치 / 운용
  - ㉡ 부대여건 고려 물리적 공간 제한시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시행
- 5 상황조치는 CCC 내 해당 기능처 · 실에서 조치
  - 정부연락관은 기능처 · 실에 위치, 실시간 적시 협조 및 조치
- 6 주요 상황발생시 사령관 주도하 전투협조회의(공조회의) 실시
  - 「상황판단 - 결심 - 대응」 절차 적용, 지휘관 주도로 조치
- 7 제대별 지표 평가와 연계된 게임안정도 평가 체계 유지
  - 예) 통합방위작전 정보공유체계와 평가지표 조정 / 일치화

62 - 59







**질 의 /**

대통령/김희중 / 2022-09-18 18:24

**이 오  
답**



隨處作主 立處皆眞 (수처작주 입처개진)

어디에서든 주인이 된다면,  
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것이 된다.

- 당나라 임제선사의 글 중에서 -